

소방관계법령 행정규제 정비

행정자치부 예방과

I. 현황

1. 규제내용

행정자치부는 '98규제개혁추진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소방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였다.

2. 주요정비내용

- 소방관련업과 관련한 각종 면허, 인가, 신고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 소방시설설치기준 및 위험물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 특히 소방관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를 년 2회에서 1회, 화재위험도가 낮은 곳은 2~3년에 1회로 축소하여 건축주 또는 방화관리자에 의한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민원처리 및 소방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부조리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키로 하였다.
 - 그동안 대국민 규제로 인식되어온 소방행정규제 총174건중 67건을 폐지하고 50건을 개선하는 등 117건을 과감히 정비하여 '98년내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3. 향후에도 대국민 소방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편의증대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소방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II. 소방법령 규제완화 추진내용

1. 총괄표

규제총수	정비			존치
	소계	폐지	개선	
174건	117(67.2%)	67(38.5%)	50(28.7%)	57

2. 과제별 정비내용

- 신고·인가제 및 소방관련업제도 등 일반제도분야 81건 (폐지 45건, 개선 36건)
- 소방시설설치기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기준 14건(폐지 8건, 개선 6건)
- 위험물안전관리분야 22건 (폐지 14건, 개선 8건)

3. 법령별 정비사항

- 소방법 개정사항 55건 (폐기 34건, 개선 21건)
 - 1) 특수장소의 불필요한 소방교육 폐지 (제8조의 3)
 - 2) 특수장소 관계인의 소방교육 폐지 (제8조의 4)
 - 3) 방화관리자 선임신고기간 완화 (제9조 제4항)
 - 4) 방화관리자 해임신고 폐지 (제9조 제4항 후단)
 - 5) 공동방화관리규정 제정 폐지 (제10조 제1항 후단)
 - 6)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기간 완화 (제15조 제1항)
 - 7)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완화 (제16조 제2항 제2호)
 - 8)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기간 완화 (제 16조 제3항)
 - 9)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 변경 (제18조 제1항)
- 10)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 폐지 (제18조 제1항)
 - 1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제한 완화 (제18조 제2항 제3호 제5호)
 - 1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기간 폐지 (제20조 제5항)
 - 13)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시 즉시 선임의무 완화 (즉시→30일 이내) (제20조 제1항)
 - 14)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및 관리범위 완화 (제20조 제1항 제5호)
 - 1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폐지 (제20조 제7항)
 - 16)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폐지 (제20조 제7항)
 - 17) 일부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폐지 (제20조 제7항)
 - 18) 위험물시설안전전문 고용의무제 폐지 (제21조 제1항)
 - 19) 소방시설점검업의 변경등록제를 변경신고제로 완화 (제33조 제1항)
 - 20)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제한 완화 (제34조 제3호 제5호)
 - 21)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신고 의무 폐지 (제35조)
 - 22)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37조)
 - 23) 소방시설점검의 소방시설관리사만 책임토록한 제한 폐지 (제38조 제4항)
 - 24)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제한 완화 (제39조 제3호 제5호)
 - 25) 소방용수시설 지정 폐지 (제43조)
 - 26) 소방용수시설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폐지 (제43조 제2항)
 - 27)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수거·교체·폐기 등 명령권 폐지 (제50조 제5항)
 - 28)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취소절차 개선 (제50조의3제1항)
 - 29)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재신청 금지기간 폐지 (제50조의3제2항)
 - 30) 성능합격 표시와 유사표시 금지 폐지 (제50조의4제3항)
 - 3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선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109조, 제112조)
 - 3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제한 완화 (제54조 제3호 제5호)
 - 33) 소방시설공사업 제영도양수 인가제 폐지 (제55조 제1항)
 - 34) 소방시설공사업 합병인가제 폐지 (제55조 제1항)
 - 35) 소방시설공사업 상속신고 폐지 (제55조 제3항)
 - 36) 소방시설공사의 도급한도액제를 폐지하고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로 개선 (제59조)
 - 37) 소방시설공사의 소방설비기사 시공관리 책임 폐지 (제64조 제1항)
 - 38) 소방시설 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대상 설정 개선 (제61조의2제1항)
 - 39) 소방설비기사의 이중취업금지 폐지 (제64조 제2항)
 - 40) 소방시설설계업 및 감리업의 변경등록제를 변경신고제로 완화 (제65조의2제1항)
 - 41) 소방시설설계·감리의 수수료 제정고시 폐지 (제65조의2제3항)
 - 42)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제한 완화 (제65조의3제3호, 제5호)
 - 43) 소방설계업자의 건축사와의 협의 폐지 (제65조의4)
 - 44) 감리보조자 배치의무 폐지 (제65조의4제3항)
 - 45)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폐지 (제65조의4제6항)
 - 46) 선언적인 유사 소방번호 사용금지 폐지 (제66조 제2항)
 - 47) 화기취급·사용제한 폐지 (제67조 제2항, 제68조)
 - 48) 화재경계지구 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의무 폐지 (제69조 제2항)
 - 49) 화재통지 방법의 선언적 조항 폐지 (제72조 제2항)
 - 50) 관계인 등의 소화의무에 대한 선언적 조항 폐지 (제72조 제2항)

- 51)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의무 폐지 (제80조)
- 52) 청원소방원제도 폐지 (제92조)
- 53)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인회원 의무가입제 폐지
(제99조 제2항)
- 54)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기관 복수 허용
(제105조)
- 55)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제119조)

- 소방법시행령 정비사항 16건 (페이지 8, 개선 8)

- 1)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기간 개선 (제4조 제4항)
- 2)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 중 피난시설 종류제한 완화 (제4조의3제1호나목)
- 3)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면제대상 확대 및 훈련횟수 완화 (제5조의2)
- 4) 2급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제9조 제2항 제9호 내지 12호)
- 5) 공동방화관리의 허용범위 확대 (제8조)
- 6)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취급량 확대
(제15조제2호가목)
- 7) 예방규정을 정하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대상 축소 (제22조)
- 8) 대량위험물저장소의 자체소방대 훈련횟수 폐지
(제23조 제5항)
- 9) 동력소방펌프 설치대상 폐지 (제28조 제6항)
- 10) 누전경보기 설치대상기준 폐지 (제29조 제3항 제1호)
- 1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기준 폐지 (제29조 제5항)
- 12) 소화수조 설치대상·기준 폐지 (제31조 제2항)
- 13) 청원소방원 관련규정 (제복착용의무) 폐지 (제46조)
- 14) 청원소방원 관련규정 (기본교육의무) 폐지 (제47조)
- 15) 한국소방안전협회 임원규정 정관에 위임하고 폐지
(제59조)
- 16)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위탁기관 확대 (제63조)

- 소방법시행규칙 정비사항 33건 (페이지 21, 개선 12)

- 1) 특수장소 소방검사 횟수 완화 (제3조제2항. 별표1)
- 2) 특수장소의 소방교육 및 훈련결과 기록부 보관의무 폐지 (제3조의2제4항)
- 3) 위험물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제외범위 확대
(제6조 제2항)
- 4) 대량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위탁전문업체의 지정 요건중 장비보유기준 폐지 (제9조의2. 별표1의3)
-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 제한 폐지 (제10조의4제7항)
- 6)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점검종류 구조안전점검으로 단일화 (제10조의5제1항. 별표2의2)
- 7)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중 일반점검 결과 폐지하고 자체보관 (제10조의5제4항)
- 8)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지정요건 중 장비보유 기준 완화 (제19조의2)
- 9)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영업범위 제한 폐지
(제19조의3제1항)
- 10)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변경지정 폐지
(제19조의2제3항)
- 1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 신고 의무 폐지
(제19조의3제3항)
- 12)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관리원 지정 관리의무 폐지 (제19조의3. 행자부고시 1998-48호 제6조)
- 13)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폐지 (제22조)
- 14) 소방시설자체점검 중 위탁점검의무 완화
(제29조 제3항)
- 15) 소방시설자체(위탁) 점검 후 봉인·검인부착 의무 폐지 (제29조제2항)
- 16)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 보관의무 폐지 (제29조 제5항)
- 17)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완화 (제30조)

- 18) 소방시설점검업 휴·폐업 등의 신고 폐지 (제34조)
- 19)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완화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 20)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부정행위자 재응시 자격제한
폐지 (제42조)
- 21)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업무 시설기준 폐지
(제56조, 별표8)
- 2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변경 신고사항 범위 축소
(제64조 제3항)
- 23) 소방시설공사업 휴업·재개업·폐업 등의 신고
폐지 (제64조 제3항)
- 24)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사실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평가제 및 공시제 도입 (제65조)
- 25)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 신고기간 완화
(제66조의2제2항)
- 26) 소방공사감리결과서 통보 및 결과보고서류 간소화
(제69조의7제2항제1호, 제2호)
- 2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를
폐지하고 변경신고로 통합하여 개선 (제69조의8)
- 28)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휴업·재개업·
폐업의 신고 폐지 (제69조의9)
- 29) 청원소방원 관련규정(배치현황신고) 폐지 (제73조)
- 30) 청원소방원 관련규정(근무감독권한) 폐지 (제75조)
- 31) 청원소방원 관련규정(신분증휴대의무) 폐지 (제76조)
- 32) 청원소방원 관련규정(관리장부비치의무) 폐지
(제77조)
- 33) 방화관리자 등의 자격수첩 등에 실무교육수료사항
기재등 가능기관확대 (제90조)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사항 10건

(폐지 2, 개선 8)

- 1) 다중이용업소의 비상벨, 비상방송설비기준 완화

(제143조의2제1호다목)

- 2) 위험물 품명별 공동저장기준 완화 (제275조제1항제1호)
- 3) 위험물 옥내저장기준 폐지 (제275조제1항제2호)
- 4) 위험물 옥외저장소의 위험물저장기준 폐지
(제275조제1항제11호)
- 5) 자동화산소화용구 설치대상 완화 (제2조제1항, 별표4)
- 6)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 옥내소화전설비 수조내 조명시설 설치의무 폐지
(제5조제6항5호)
· 옥내소화전설비 적색등 기준 폐지 (제8조제3항제3호)
- 7)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기준 개선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옥외가스주입구 설치의무
폐지 (제51조제3항)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배관기준 완화 (제61조제2호)
· 분말소화설비 배관기준 완화 (제68조)
- 8) 아파트 피난기구 설치의무 중 공기안전매트 설치대
상의 완화 (제100조 제2항 제2호)
- 9)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중 대형피난구유도 등
설치의무 완화 (제103조의2, 표가, 나호)
- 10)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 완화 (제135조제1항제1호)

- 소방용품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1건(개선)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시설 구비·심사제도
개선 (제8조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고시 2건 (폐지)

- 1)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운영규정 제정 폐지 (행정자치
부고시 1998-48호 제6조)
- 2)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업무 휴·폐업 신고기
간을 단축 (행정자치부고시 1998-48호 제7조) **(FLK)**